■ 수도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1. 3. 30.>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제34조의2 관련)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배치기준
1. 600km 미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2. 600km 이상 1,000km 미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3. 1,000km 이상 1,500km 미만	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4. 1,500km 이상	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